

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.

이 행 조 항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원고 소송대리인

법무법인 태유

담당변호사: [redacted] 조효동

피 고

보증금반환 청구의 소

청구취지

1. 피고는 원고에게 14,48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[redacted]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